

1. 개정 이유

농업용 지게차를 건설기계에서 제외하고 농업기계에 포함해 달라는 농업인의 요구 해결을 위해 국토부와 협업하여 방안 마련

*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 ~농업기계는 별표1과 같다.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2톤 미만 농업에 활용되는 지게차를 농업기계로 포함하기 위해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농작업에 쓰이는 2톤 미만 지게차를 농업용 지게차로 정의

* 농작업은 농림축산물의 생산 및 생산 후 처리를 포함

** 국토부는 지게차 범위에 농업용 지게차 제외되도록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

나. 농업용 지게차를 제조번호 차대 각인 및 농업기계 신고제 대상에 추가하여 건설기계 등록제를 대체한 이력 관리 추진

다. 사후관리 및 혼용 방지 등 농업기계로서 관리를 위한 농업용 지게차 내용연수 8년으로 설정

라. 농업용 지게차 농기계 종합검정 대상에 추가하여 건설기계 형식승인을 대체한 성능·안전관리 추진

마. 농업용 지게차를 안전장치조사 대상에 추가하여 건설기계 정기검사를 대체한 안전관리 추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3항 중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및 이앙기”를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및 농업용 지게차”로 한다.

제14조의3제1항 중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및 이앙기”를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및 농업용 지게차”로 한다.

제14조의4제1항 중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및 이앙기”를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및 농업용 지게차”로 한다.

별표 1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1. 농업용 지게차	농작업(「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림축산물의 생산 또는 농림축산물과 그 부산물의 생산 후 처리작업을 말한다)에 사용되는 2톤 미만(최대들어올림 용량)의 지게차
-------------	---

별표 2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농업용 지게차	8년
------------	----

별표 4 제1호어목을 저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어. 농업용 지게차

별표 11의2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농업용 지게차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농업기계의 범위(제1조의2 관련)

농업기계명	범위
1. 농업용 트랙터	경운, 정지 및 운반 등의 농작업수행을 주목적으로 설계되어 동력취출장치, 견인장치, 승강장치 등의 작업기를 장착하고, 구동장치를 갖춘 차축이 2개 이상인 자주식(自走式) 원동기계
2. 농업용 트랙터 보호구조물(ROPS)	농업용 트랙터에 장착된 캡 또는 프레임 형식의 운전자 보호장치
3. 콤바인	예취(베기)장치, 탈곡장치, 정선(精選)장치 및 배출장치 등을 갖추고 벼, 보리, 콩, 잡곡 등의 농작물을 베는 동시에 탈곡하고 정선(精選)할 수 있는 자주식 농작물 수확기계
4. 이앙기	주행장치, 모탑재장치 및 식부(모심기)장치 등을 갖추고 벼의 모를 논에 옮겨 심는 자주식 기계[부분경운형 및 멀칭(비닐덮기)겸용형을 포함한다]
5. 정식기	식부장치, 모공급장치, 복토(흫덮기)나 진압장치(필요한 경우에만 갖추 수 있다) 등을 갖추고 벼 외의 배추, 고추, 양파, 고구마 및 양상추 등의 어린모를 농경지에 옮겨 심는 자주식 기계(농업용트랙터 장착식을 포함한다)
6. 농업용 난방기	고체연료, 유류, 전기 등 유해가스 발생 우려가 적은 에너지를 열원으로 하여 농업용 시설을 난방하는 기계로서 연소가스가 시설 내로 유입되지 않는 구조를 가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난방기(전기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난방기는 전기안전성적서 또는 전기안전 인증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 가. 온풍식: 정격난방능력 210MJ/h 이상(전기식은 전기발열체의 소비전력이 10kW 초과)인 송풍기 일체식 구조로 천장, 기둥, 바닥에 설치할 수 있는 난방기계 나. 온수식: 정격난방능력 210 MJ/h 이상(전기식은 전기발열체의 소비전력이 10kW를 초과)이고, 온수를 연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의 난방기계 다. 온풍·온수 겸용식: 정격난방능력 210 MJ/h 이상(전기식은 전기발열체의 소비전력이 10kW를 초과)이고, 온풍·온수식

	난방을 각각 독립적 또는 동시에 가동할 수 있는 구조의 난방기계 라. 방열형: 발열체 소비전력 10kW 이하로 천장·기둥·바닥 설치식 구조를 가진 방열형 난방기로서 난방 온도 및 ON/OFF를 제어할 수 있는 난방기계(발열체로부터의 화재 또는 화상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를 부착하고 공인기관의 전기안전성 인증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
7. 농산물건조기	농산물(곡물 및 유채는 제외한다) 건조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계(냉장검용식을 포함한다)
8. 농산물 저온저장고	농산물을 보관·저장하는 목적으로 설계된 저장용적 50m ³ 이하(바닥면적 10.56m ² 이하)로서 이동할 수 있는 저온저장기계
9. 가정용 도정기	농가 단위에서 벼를 투입하여 현미 또는 백미를 가공하는 소요동력 1kW 이상 10kW 이하인 가정용 현미기, 정미기 또는 복합식 도정기계
10. 농업용 동력 운반차	최대출력 18kW 이하의 농업용엔진 또는 농업용전동기, 적재함과 주행장치 등을 갖추고 농산물 등의 운반에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자주식 운반차(배기량 50cc 미만의 가솔린엔진으로 사용되거나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전동기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승용형 1) 최고주행속도: 30km/h 이하 2) 적재정량: 200kg 이상 1000kg 이하 3) 적재설비 바닥면적: 1.0m² 이상 나. 보행형 1) 최고주행속도: 7km/h 이하 2) 적재정량: 80kg 이상 500kg 이하 3) 적재설비 바닥면적: 0.5m² 이상 다. 자율주행형 1) 최고주행속도: 30km/h 이하 2) 적재정량: 80kg 이상 500kg 이하 3) 적재설비의 바닥면적: 0.5m² 이상

11. 농업용 로더 (loader, 올리개)	농작업에 사용되는 자체중량 2톤 미만의 자주식 로더[차체굴절식 조향장치(방향조절장치)가 있는 자체중량 4톤 미만의 타이어식 로더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용 트랙터에 버킷(흙 등을 퍼 올리는 통)을 장착하여 로더작업을 수행하는 작업기
12. 농업용 굴착기	농작업에 사용되는 자체중량 1톤 미만의 자주식 굴착기 또는 농업용트랙터 등에 버킷을 장착하여 굴삭작업을 수행하는 부속작업기
13. 관리기	고랑·두둑 성형(두둑만들기), 중경(中耕, 사이갈이), 제초, 시비(거름주기), 방제, 파종, 비닐피복(비닐덮기) 등의 다양한 작업기를 부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2 이하의 특정 작업 전용형은 제외한다) 가. 승용형: 작물 손상 방지를 위하여 최저 지상고가 전륜과 후륜의 중심보다 높게 설계된 구조로 최저지상고는 400mm 이상이고 협폭 타이어가 장착된 최고주행속도 15km/h 이하의 자주식 승용형 원동기계 나. 보행형: 고랑·두둑 성형, 중경, 제초, 시비(거름주기), 방제, 파종, 비닐피복 등의 작업기를 부착하여 핸들 위치를 전·후로 전환하여 작업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구조로 탑재원동기 최대출력 9kW 미만, 최고주행속도 7 km/h 이하인 자주식 보행형 원동기계
14. 비료살포기	퇴비, 분말비료, 입상비료 또는 액상비료를 농경지에 살포하기 위하여 적재장치, 반송장치, 살포장치 등을 갖춘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가. 자주식: 동력전달 차축을 가진 보행자주식 또는 승용자주식 비료살포기계(자율주행형 비료살포기계를 포함한다) 나. 장착식: 농업용 트랙터, 동력경운기 등에 장착되거나 연결·견인되도록 설계된 비료살포기계
15. 곡물건조기	곡물의 건조를 균일하게 하기 위한 순환장치 또는 교반장치를 갖춘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곡물 또는 유채 건조기계 가. 열풍형 건조기(원적외선 건조기는 포함하고, 연속식 건조기는 제외한다)

	나. 상온 통풍저장형 건조기
16. 농업용 고소작업차(과수용 작업대를 포함한다)	과수의 적과(열매 숙아내기), 가지치기 및 수확 등의 농작업을 위해 작업자의 탑승과 작업대에 주행 및 승하강 등의 조작장치를 갖춘 자주식 작업차(스피드스프레이어 등에 장착하여 승하강할 수 있는 과수용 작업대를 포함한다)
17. 농업용 방제기	병해충 방제(防除), 제초 등을 목적으로 설계된 것으로서 약액탱크, 농약살포장치 및 송풍장치(원거리용 방제기, 스피드스프레이어만 해당한다) 등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가. 주행형 동력분무기: 약액탱크, 펌프 및 노즐 등을 갖추고 권취(호스를 자동으로 감는 장치), 긴막대 등의 장치로 농작물에 농약을 살포하는 기계(자주식은 최고주행속도가 승용형의 경우 20km/h 이하, 보행형은 7km/h 이하일 것) 또는 농업용트랙터 등의 부착식 작업기(농업용 엔진 등의 동력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한다) 나. 원거리용 방제기: 약액탱크, 펌프, 송풍팬, 송풍관 및 노즐 등을 갖추고 논이나 밭 등에서 20 m 이상 원거리로 약액을 살포하는 승용자주식 기계(최고주행속도 20km/h 이하일 것) 또는 장착식 작업기 다. 살분무기: 농업용엔진, 펌프 및 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연무형태 액체) 발생장치 등을 갖추고 액제나 분제 등의 농약을 평균입경 30~50μm 범위로 미립화시켜 살포하는 기계 라. 스피드스프레이어: 약액탱크, 펌프, 송풍팬 및 노즐 등을 갖추고 평균입경 30~50μm 범위로 약액을 미립화시켜 150° 이상의 범위로 살포하는 자주식(최고주행속도는 승용형의 경우 20km/h 이하, 보행형은 7km/h 이하일 것) 또는 농업용 트랙터 장착식 작업기 마. 토양소독기: 약액탱크, 펌프 및 주입장치 등을 갖추고 토양에 직접 약액을 주입하는 자주식기계 바. 시설용 분무기: 온실 내에서 농작물의 병해충 방제를 위해 레일 등 고정경로를 따라 이동하거나 정지상태(장치가

	고정 설치된 상태를 말한다)에서 액제를 살포하는 기계 사. 해충방제기: 포집장치 또는 살충장치 등을 갖추고 농작물에 유해한 해충의 포집 또는 살충 방제하는 기계 아. 연무기: 연소부와 고압분사장치 등을 갖추거나 연무용 노즐과 송풍기 등을 갖추고 약제를 평균입경 20 μ m 정도로 미립화시켜 입자를 부유 분산살포 하는 기계
18. 농업용 파쇄기	절삭 또는 파쇄장치 등을 갖추고 폐목재, 잔가지, 벌채 후 부산물, 사료작물 등을 절삭 또는 파쇄하는 자주식, 정치식 또는 농업용 트랙터 장착식 기계
19. 농업용 톱밥제조기	목재 등을 절삭하여 톱밥을 만드는 자주식 톱밥제조기 또는 농업용 트랙터 장착식 기계
20. 농산물세척기	공급장치, 세척장치 및 배출장치를 갖추고 채소류 및 과일류 등을 세척하는 기계
21. 예취기	주행장치, 예취장치 등을 갖추고 벼, 두류, 참깨 등의 농작물을 베어 수확하는 기계
22. 동력제초기[모우어(mower, 잔디깎는 기계)를 포함한다]	주행장치 및 제초장치를 갖추고 잡초를 자르는 용도에 사용되는 승용자주형, 보행형 또는 부착형 방식의 제초기계
23. 농업용 리프트	평탄한 장소에서 작업자가 선반이나 작업대 등에 탑승하지 않고 농산물이나 농자재 등을 이동시키거나 상하차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자주식 또는 트랙터 부착식 리프트(농산물 상하차운송기)
24. 트레일러	농업용 트랙터, 동력경운기 등에 장착하여 농산물이나 농업기계 등을 운반하는 적재장치(곡물적재용을 포함한다)
25. 농업용 베일러(baler, 벧짚 묶는 기계)	벧짚 또는 목초 등을 사각형 또는 원형으로 압축하여 묶어주는 자주식 베일러 또는 농업용 트랙터 장착식 베일러(베일피복기 겸용형을 포함한다)
26. 농산물 결속기	파, 마늘, 부추 등의 농산물을 부피, 크기 또는 중량별로 끈이나

(結束機)	접착용 자재 등을 사용하여 묶는 기계
27. 농업용 절단기	농산물과 농산부산물의 줄기절단, 파쇄, 세절(잘게 자름)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가. 농산물 세절기: 감, 약초 등 임산물과 마늘, 양파 등 농산물을 세절하는데 사용되는 기계 나. 덩굴파쇄기: 고구마 등의 덩굴을 절단·파쇄하는 기계(자주식 또는 농업용 트랙터 등의 장착식을 포함한다) 다. 농산물 절단기: 마늘, 양파 등의 줄기를 절단하는 기계(자주식 또는 농업용 트랙터 등의 장착식을 포함한다) 라. 잔가지 파쇄기: 절단된 과수 등의 잔가지를 절단·파쇄하는 기계(자주식 또는 농업용 트랙터 등의 장착식을 포함한다) 마. 사료작물 절단기: 가축의 사료용으로 사용할 목초, 결속 벗짚 및 옥수수대 등을 세절 또는 파쇄하는 기계(자주식 또는 농업용 트랙터 등의 장착식과 농업용 전동기의 동력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한다)
28. 베일피복기	벗짚 또는 목초 등을 압축하여 묶어 놓은 베일을 스트레치 필름 등으로 감아서 밀봉하는 기계(자주식 또는 농업용 트랙터 장착식 베일피복기를 포함한다)
29. 동력수확기	땅속작물, 엽채류, 과실류, 사료작물 등을 굴취(캐냄), 인발(뽑아냄), 절단 및 탈실(열매 떼어내기) 등의 방법으로 수확 또는 수집하는 기계(벼 등 곡물 콤바인은 제외한다) 가. 땅속작물수확기: 각종 땅속작물(감자, 고구마, 마늘, 양파, 인삼 등)을 수확하기 위한 굴취기 또는 굴취 후 토사 등을 분리한 후 용기에 수집하는 기계 나. 엽채류수확기: 부추, 시금치, 배추 등 엽채류를 베어 수확하거나 수확한 엽채류를 수집하는 기계 다. 과실수확기: 고추, 토마토, 딸기, 사과, 배, 감, 매실 등의 과실을 줄기로부터 분리하거나 분리된 과실을 수집하는 기계 라. 사료작물수확기 : 목초, 호밀 또는 옥수수 등의 사료작물을 베는 동시에 절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확하는 기계
30. 경운기	경운, 정지 및 운반 등의 농작업기를 부착할 수 있는 동력취출

	장치 및 견인장치 등을 갖추고 최저 지상고가 150 mm 이상으로 습답(물논)에서의 작업이 용이한 구조의 자주식 보행형 원동기계(특수한 목적으로 설계된 것은 제외한다)
31. 사료배합기	배합통, 교반장치 등을 갖추고 조사료, 농후사료, 발효사료, 화식사료 등을 배합하는 기계(자주식, 농업용 트랙터 장착식 또는 정치식을 포함한다)
32. 동력파종기	종자통, 종자배출장치 및 복토장치(필요한 경우에만 갖추 수 있다) 등을 갖추고 보리, 콩, 마늘, 감자, 옥수수 등의 종자 및 볍씨를 직접 농경지에 파종하는 기계(자주식 또는 농업용 트랙터 등의 장착식을 포함한다)
33. 사료공급기(사료급이기)	사료적재함, 사료배출장치 등을 갖추고 가축에게 조사료, 농후사료, 배합사료, 화식사료 등의 사료를 공급하는 자주식 또는 정치식 사료급이기
34. 농산물제피기	공급장치, 제피장치 등을 갖추고 농산물의 껍질을 자동으로 제거하는 기계
35. 탈곡기	농작물의 투입장치 및 탈곡장치 등을 갖추고 예취된 벼, 보리, 콩, 옥수수, 잡곡 등을 탈곡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자주식 또는 농업용 트랙터 등의 장착식 및 농업용 엔진 등의 동력을 이용하는 기계도 포함한다)
36. 농산물선별기	미곡 외 과일, 구근(알뿌리), 채소 등의 농산물을 비중, 중량, 색, 당도, 형상 등에 따라 선별하는 기계(휴대형 비파괴 과실류 측정장치 등도 포함한다)
37. 부속작업기	농업용 트랙터, 경운기, 관리기, 이앙기 등에 장착하거나 견인되어 사용되는 농작업 기계
38. 농업용 무인 항공기	파종, 시비, 방제와 농작물 생육상태 예찰 등의 장비를 장착하여 농산물 생산에 활용되는 무인헬기 및 멀티콥터
39. 농축산물 생산 환경조절장치	농작물 및 가축 등의 생육환경을 자동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온실 및 축사시설 등의 온습도, 풍향, 풍속 등의 자동제어 기자재
40. 농산물포장기	수확 또는 가공한 농산물을 비닐, 종이, 박스 또는 병 등에 포장하는 기계

<u>41. 농업용 지게차</u>	<u>농작업(「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림축산물의 생산 또는 농림축산물과 그 부산물의 생산 후 처리작업을 말한다)에 사용되는 2톤 미만(최대들어올림 용량)의 지게차</u>
<u>42. 그 밖의 농업기계</u>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업기계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농업기계의 내용연수(제2조의4제1항제1호 관련)

농업기계	내용연수
1. 경운·정지용 기계	
가. 동력경운기	6년
나. 농업용 트랙터	8년
다. 그 밖의 경운·정지용 기계	6년
2. 재배관리용 기계	
가. 동력이앙기 및 그 부속작업기	5년
나. 관리기 및 그 부속작업기	5년
다. 농업용 방제기	5년
라. 동력파종기	5년
마. 동력이식기	5년
바. 스피드스프레이어	6년
사. 그 밖의 재배관리용 기계	5년
3. 수확조제용 기계	
가. 동력수확기	5년
나. 동력예취기	5년
다. 농업용 콤바인	5년
라. 동력탈곡기	8년
마. 농산물건조기·곡물건조기	8년
사. 그 밖의 수확제조용 기계	5년
4. 농업용 엔진	8년
5. 농업용 양수기	8년
6. 가정용 도정기	10년
<u>7. 농업용 지게차</u>	<u>8년</u>
<u>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농업기계</u>	5년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검정대상 농업기계(제3조의2제1항 관련)

1. 종합검정

- 가. 농업용 트랙터
- 나. 농업용 트랙터 보호구조물(ROPS)
- 다. 콤바인
- 라. 이앙기
- 마. 정식기
- 바. 농업용 난방기(가스식은 제외)
- 사. 농산물건조기
- 아. 농산물저온저장고
- 자. 가정용 도정기
- 차. 농업용 동력운반차(승용형)
- 카. 농업용 로더(loader, 올리개) [자체중량 2톤 미만의 동력전달 차축을 가진 승용자주식 전용형 작업기계(차체굴절식 조향장치가 있는 자체중량 4톤 미만의 타이어식 로더를 포함한다)]
- 타. 농업용 굴착기(전용형, 자체중량 1톤 미만)
- 파. 관리기(승용형)
- 하. 비료살포기(승용자주형)
- 거. 농업용 베일러(baler, 볏짚 묶는 기계) (승용자주형)
- 너. 동력수확기[자주형 또는 농업용 트랙터 부착형(농업용 트랙터 부착형 굴취전용 땅속작물수확기는 제외한다)]
- 더. 동력파종기(승용자주형, 농업용 트랙터 부착형 또는 전용형 벼직파기를 포함한다)
- 러. 경운기
- 머. 스피드스프레이어
- 버. 주행형 동력분무기(승용자주형)

서. 원거리용 방제기

어. 농업용 지게차

저.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기계

2. 안전검정

가. 농업용 동력운반차(보행형)

나. 곡물건조기

다. 농업용 고소작업차(과수용 작업대를 포함한다)

라. 주행형 동력분무기(보행자주행 및 부착형)

마. 농업용 파쇄기

바. 농업용 톱밥제조기

사. 비료살포기(승용자주행은 제외한다)

아. 농산물세척기

자. 예취기

차. 동력제초기[모우어(mower, 잔디깎는 기계)를 포함한다]

카. 농업용 리프트

타. 트레일러(농업용 트랙터 및 경운기용)

파. 농업용 베일러(승용자주행은 제외한다)

하. 농업용 절단기

거. 베일피복기

너. 관리기(보행형)

더. 스피드스프레이어(자주행은 제외한다)

러. 사료배합기

머. 사료공급기(사료급이기)

버. 농산물제피기(農産物除皮機)(공기식은 제외한다)

서. 탈곡기(주행형)

어. 동력수확기(농업용 트랙터 부착형 굴취전용 땅속작물수확기로 한정한다)

저.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기계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1의2] <개정>

안전관리 조사대상 농업기계(제18조의9 관련)

1. 농업용 트랙터
2. 농업용 동력운반차
3. 콤바인
4. 스피드스프레이어
5. 트레일러(농업용 트랙터 및 경운기용)
6. 비료살포기

7. 농업용 지게차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기계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농업기계 표시의무) ① ~ ② (생략) ③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농업용 트랙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란 <u>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및 이앙기</u> 를 말한다. ④ (생략)	제14조의2(농업기계 표시의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u>농업용</u> <u>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및 농업용 지게차</u>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의3(농업기계의 신고) ①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제조번호를 농업기계의 본체 중 차대에 각인한 <u>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및 이앙기</u> 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판매한 경우 해당 농업기계를 판매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신품 농업기계 판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하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	제14조의3(농업기계의 신고) ① ----- ----- ----- ----- ----- <u>농업용</u> <u>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및 농업용 지게차</u> ----- ----- ----- ----- ----- ----- ----- ----- ----- -----

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
다.

1. 내지 5. (내용생략)

② (내용생략)

제14조의4(농업기계 폐기 등)

①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신
고해야 하는 폐기 신고대상 농
업기계는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제조번호를 농업기계의 본
체 중 차대에 각인한 농업용 트
랙터, 콤바인 및 이앙기를 말한
다.

② 내지 ③ (내용생략)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농업기계의 범위

1. 내지 40. (내용생략)

<신 설>

--

1. 내지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의4(농업기계 폐기 등)

① -----

-----농업용 트랙
터, 콤바인, 이앙기 및 농업용 지
게차-----

② 내지 ③ (현행과 같음)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농업기계의 범위

1. 내지 40. (현행과 같음)

41. 농업용 지게차

농작업(「농업기계화 촉진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림축산물의 생산 또는
농림축산물과 그 부산물의
생산 후 처리작업을 말한

41. <u>그 밖의 농업기계</u> (내용생략)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2] <u>농업기계의 내용연수</u> 1. 내지 6. (내용생략) <u><신 설></u> 7. (내용생략)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4] <u>검정대상 농업기계</u> 1. 종합검정 가. 내지 서. (내용생략) <u><신 설></u> 어. (내용생략) 2. 안전검정 (내용생략)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1의2] <u>안전관리 조사대상 농업기계</u> 1. 내지 6. (내용생략)	<u>다)에 사용되는 2톤 미만 (최대들어올림 용량)의 지 게차</u> 42. <u>그 밖의 농업기계</u> (현행과 같음)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2] <u>농업기계의 내용연수</u> 1. 내지 6. (현행과 같음) 7. <u>농업용 지게차</u> <u>8년</u> 8. (현행과 같음)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4] <u>검정대상 농업기계</u> 1. 종합검정 가. 내지 서. (현행과 같음) 어. <u>농업용 지게차</u> <u>저.</u> (현행과 같음) 2. 안전검정 (현행과 같음)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1의2] <u>안전관리 조사대상 농업기계</u> 1. 내지 6. (현행과 같음)
---	--

<신 설>

7. (내용생략)

7. 농업용 지게차

8. (현행과 같음)